

< 정 오 표 >

1. 정정대상 투자신탁 : 유리베트남알파증권투자신탁[주식]

2. 효력발생예정일(변경시행일) : 2018.01.23

3. 주요 정정사항

- 부책임용인력 삭제
- 법 개정사항 반영
- 모펀드 변경사항 반영

[규약]

항 목	변경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제20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	법 개정사항 반영	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2호, 제19조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	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2호, 제19조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
부 칙	-	-	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8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[일괄신고서/투자설명서]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요약정보			
Ⅱ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			
[1] 투자전략			
4. 운용전문인력	부책임용인력 삭제	부책임용인력 : 박상건	<삭제>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변경에 따른 연혁 추가	-	2018.01.23 - 부책임용인력 삭제 - 법 개정사항 반영 - 모펀드 변경사항 반영
5. 운용전문인력	부책임용인력 삭제	가. 운용전문인력 부책임용인력 : 박상건 나.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해당사항없음	가. 운용전문인력 <삭제> 나.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부책임용전문인력 : 박상건(2016.07.13 ~ 2018.01.22) 주) 제출일 기준 최근 3년간의 변동내

			역 입니다.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. 투자제한	모 펀드 변경 사항 반영	<p>[투자한도 및 제한의 예외]</p> <p>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계약 제18조제2호, 제19조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.</p> <p>[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]</p> <p>-투자한도 및 제한의 예외</p> <p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5호 내지 제9호, 제19조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보며, 금융투자업 규정 제4-5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19조제8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합니다</p>	<p>[투자한도 및 제한의 예외]</p> <p>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계약 제18조제2호, 제19조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.</p> <p>[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]</p> <p>-투자한도 및 제한의 예외</p> <p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5호 내지 제9호, 제19조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보며, 금융투자업 규정 제4-5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19조제8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합니다.</p>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	
1. 재무정보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반기 자료 반영	-	업데이트
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		
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	법 개정사항 반영	<p>라. 손해배상책임</p> <p>③ 증권신고서 - - 않습니다.</p> <p>-그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(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인)</p>	<p>라. 손해배상책임</p> <p>③ 증권신고서 - - 않습니다.</p> <p>-그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(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35조 제2항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)</p>